연구 자료

일본의 국영무역 운용현황과 시사점

김 동 민*

- 1. 서론
- 2. 일본의 현행 국영무역 및 시사점
- 3. UR 이후 일본의 국영무역 및 시사점
- 4. 요약 및 결론

1. 서 론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와 농업개혁 방향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되어 나갈 전망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없는 관세화 및 시장접근 원칙에 따라 농산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관세화할 경우수출국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시장접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접근 보장 물량을수입하는 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경제적 잉역를 얻게 된다. 또한 시장접근 물량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국내 피해를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세화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 입차익을 피해당사자인 농업부문에 환원하 고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수입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2. 일본의 현행 국영무역 및 시사점

일본의 국영무역 운영 품목은 농산물로서 유제품 일부, 양곡류 일부, 생사 등이 있으 며 비농산물로서는 잎담배, 소금, 알콜, 아편 등으로 이들 품목은 GATT 17조 국영무역 통고의무에 따라 GATT 통보한 품목이다 (표 1 참조).

농산물의 경우 국영무역 특징은 국내 수 급 관리와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 매 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

서 시장접근 물량은 국영무역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우리 보다 한발 앞서 국영무역 제도를 운영해 왔 고 국제 농산물 교역 질서 변화에 효율적으 로 대처해 온 일본의 국영무역제도를 검토 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까지 시행해 온 일본의 국영무역을 검토하 고 UR 타결 이후 최근 변화된 부분을 검토 하고자 한다.

^{*} 책임연구원.

표 1 일본의 국영무역 품목 내역

(1991년 4월 기준)

	품 목	실 시 기 관	근 거 법	수입무역관련상의 조치	
농 산	 ○ 탈지분유 전지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 전지분유(0402) ○ 버터밀크파우더 (0403) ○ 유장분말(0404) ○ 버터(0405) 	축산진흥사업단	가공원유 생산자 보조금 등 잠정	IQ	
물	 소맥, 메슬린(1001) 보리, 나맥(1003) 쌀(1006) 라이소맥(1008) 	식량청	식관법	IQ	
	○ 생사(5002)	생사류가격안정사업 단	견사가격안정법	2호 승인(AA)	
비 농 산 물	○ 잎담배 ○ 소금 ○ 알콜 ○ 아편	일본담배산업주식회 사 " 통상성 후생성	담배사업법 소금사업법 알콜전매법 아편법	사전확인(AA) IQ IQ IQ	

수급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국영무역 및 국내 수급안정 정책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원료와 가공관계를 가진 유제품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하다.

2.1. 일본 국영무역 운용실태(유제품의 경우)

우유의 소비는 직접 마시는 음용유(시유) 와 가공용 원료유로 구분된다. 직접마시는 음용유는 신선도 등의 문제로 수입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없으나 높은 대체관계에 있고 경쟁력이 뒤지는 유제품은 축산진홍사업단이 국영무역을 통해 국내 우 유 및 유제품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제품 국영무역은 부족불제도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바 먼저 부족불제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낙농가에 지불하는 보증가격이 설정된다. 보증가격은 우유 생산량 중 50% 이상을 가공원료용으로 공급하는 지역에 국한한다.1 보증가격 설정은 생산비 및 소득보상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1 1972}년에는 北海道, 靑森, 岩手, 山刑, 福島, 長野, 鳥取 등 1道 6현이었지만 그 후 음용유 비율(시유화율)이 50%를 넘는 현이 늘어나 1978년 이후 北海道만이 해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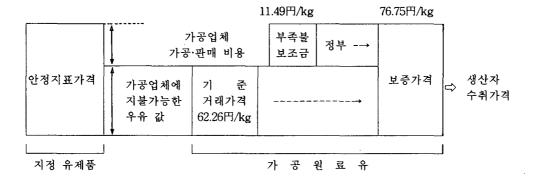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가공원료유 및 지정 유제품 가격지지 구조, 1993

보증가격 = C + T

C는 북해도의 제2차 추정생산비 T는 북해도의 집송유 경비, 판매수수료, 기획관리노동비

한편 유제품 가공업체가 원료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기준거래가격은 주요 유제품 판매 가격에서 가공업체의 가공·판매 경비 및 이 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공업자가 지불가능 한 가공원료용 원유가격은 아래와 같이 계 산된다.

기준거래가격 = $\sum (P' - C) \div u \times W$

P'는 안정지표가격 2

C는 유제품 가공업자의 가공판매 경비 및 이윤

u는 해당 유제품의 단위당 가공 필요 우유량 W는 해당 유제품의 생유 환산량 가중치

따라서 정부가 원료가공유 재생산을 우유 생산자에게 보장하는 보증가격과 유가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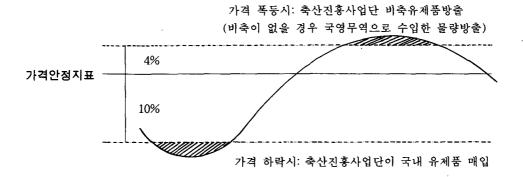
체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거래가 격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정부가 부족불로 지불하고 있다<그림 1>.

더욱이 지정유제품(원료용 버터, 탈지분 유.3 전지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에 대해서 는 농림수산장관이 안정지표가격을 매년 설 정하고 유제품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함으로 써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유제품의 안정지표가격은 원료가 공유의 기준거래 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 에 원료가공유의 가격지지는 수입유제품의 일원적 관리 즉 국영무역을 전제로 성립되 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축산진흥사업단은 지 정 유제품의 수입을 일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방출을 행하고 있다. 축산진홍사업단은 지정 유제품 의 안정지표 가격을 매년 설정하고 시장가 격이 안정지표가격을 4% 초과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재고 물량을 방출하거나 해당 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² 지정 유제품의 생산조건 및 수급 사정, 기타 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지정 유제품의 소비 안정에 상응하는 수준에 결정되며 농림수산 성 가격조사에 기초한다.

³ 탈지분유 1988년 미국의 GATT 제소로 패소 했으나 일본정부는 아이스크림과 가공치즈를 자유화하는 대신 탈지분유를 자유화에서 제 외시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현재도 국영무 역대상 품목으로 남아 있다.

그림 2 일본의 유제품 가격 안정조치



시장가격이 안정지표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유제품을 매입한다. 축산진홍사업단은 유제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지정유제품 가격을 14% 안정대에서 유지함으로써 안정지표가격과 연결되어 있는 가공원료유의 가격을 안정시키는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와 같이 일본의 유제품 국영무역은 완 벽하게 국내 유제품과 가공원료유가 연계되 어 있으며 축산진흥사업의 유제품 수입 방 출 및 수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 유제품의 수입은 축산진홍사업단이 일정 조건을 갖춘 수입업자(상사)에 대해 수입할당을 하고 경쟁입찰(CIF 가격)에 의해매입한다. 이 경우 유제품의 품질기준이나기간은 설정하나 수입선에 대해선 자유롭다. 따라서 일본의 국영무역은 일정 조건을 갖춘수입상사에 한정해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선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GATT 17조 1항 무차별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상업적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4

축산진흥사업단은 수입된 유제품을 지정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것을 수시로 시장에 방출한다. 매도는 일반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입찰자는 유제품 가공업자, 실수요자, 도매업자 등으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이것은 품질이 저하되거나 재고량이 소량이어서 판매하기 어려울 경우에 취하는 방법이고 전체적으로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

축산진홍사업단의 수급관리는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생산과잉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및 판매 불가능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품질이 저하된 경우는 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제품과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과잉생산된 경우에는 개별생산할당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였다. 1989년부터는 特別調整乳制를 실시하

³ GATT 17조 1항의 무차별원칙은 통상의 상 관습에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을 말하고 상업적 조건은 가격, 품질, 입수가 능성, 시장성, 운송 기타 판매조건 등에 대해 오로지 상업적(이윤극대화) 고려를 충분히 보 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 시작했는데 이는 생산목표수량을 기초수 량과 조정수량으로 나누고 조정수량에 대해 서 현마다 희망수량을 정하지만 이를 초과 하여 과잉되었을 경우 해당현의 책임하에 초과분을 가공하거나 시장격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재고 보관에 의한 수급조정을 위해 생산자에 의한 생유 수급 조정기금(축산진흥사업단의 수입차익에서 105억엔과 특별조정유에서 적립한(5엔/kg) 금액 26억엔)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993 년 8월에는 과잉대책으로 버터 2만 8,900톤 의 민간재고가 격리되었고 이것에 필요한 금리, 보관료 등 14억엔이 동기금에서 지출 되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생산자 단체도 수 급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조정에 따른 위 험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으 로 UR 타결로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는 부족불제도 및 국영무역이 무너질 경우 에 대비해 생산자 자체의 수급조정 능력을 서서히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 일본 국영무역의 시사점

일본의 국영무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국내 수급 안정 또는 가격 안정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근거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영무역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국영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일본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 영무역기관이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도 록 함으로써 가격안정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양파 및 파 파동은 시장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통공사가 적절한 때 시장개입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시장개입 또는 수입이 결정될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매, 방출, 수입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국영무역 실시 목적이 뚜렷 하여 대외 설득력이 높고 국영무역의 정당 성을 지니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 나라도 국 영무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무역 실시 목적을 뚜렷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은 국영무역 품목을 GATT 통보의무에 따라 통보했고 비교적 상업적 고려(가격, 품질, 입수 가능성, 시장성, 수송 등구입 및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여)는 지켜지고 있으나 수입업체 지정 등 무차별 대우는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우리 나라는 앞으로 운영하는 국영무역에대해서는 일본보다 자의적 운용을 줄이고명료성을 확보해서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국영무역 품목에 대해 지금까지 국영무역 기관이 전적으로 수급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최근 생산자 단체에게도 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구조의 변모, 장기적으로 수입자유화되어 국영무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영무역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국영무역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UR 이후 일본의 국영무역 및의 시사점

UR 이후 일본의 국영무역운용 방안은 대체로 지금까지 운용해 온 골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달리 수입차액(mark-up)을 계산하여5 국영무역관리계획과 함께 GATT(이행계획서(C/S))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본절에서 일본 이행계획서 (C/S)상의 국영무역관리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가 얻을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1. 일본 C/S상의 국영무역 내용

일본의 C/S의 국영무역 특징은 우리 나라 와는 달리 마크-업을 명기했다는 것이다<부표 1 참조>. 일본은 이행계획서상에서 기존의 국영무역 품목은 그대로 국내 수급 안정차원에서 국영무역을 실시하되 마크-업 부과에 대해 6개월간의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나 결국은 C/S상에 마크-업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GATT 2조 1항과 4항(마크-업도 양허하고 정상적인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금지와 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당사국과의 협상의무)에 따라 C/S상에 마크-업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마크-업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이해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해

GATT에서 패소하면 국영무역 더 나아가 식 관제도까지 붕괴할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일본은 마크-업을 부과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MMA), 현행시장접근(CMA)에 대해 수출국에게 시장접근 기회 부여가 아니고 해 당 물량을 전량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처럼 일본이 시장접근 물량을 전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면서 마크-업을 C/S 상에 명기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으로 국영무역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마크-업이 관세로 전환될 것임을 명기함으로써 앞 으로 국영무역 철폐시 관세와 더불어 국내보 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이 C/S상에 제출한 국영무역품 목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은 쌀, 그리고 관 세화 품목인 소맥, 보리, 유제품, 생사 등으 로 지금까지 국영무역으로 운용해 왔던 품 목들로서 품목 변동은 없다. 단지 마크-업 설정이나 감축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 쌀 의 마크-업 상한은 292円/kg으로 되어 있고 이행기간 동안 이를 감축해나 가지 않는 반 면 소맥, 보리, 유제품은 각각 마크-업을 설 정하고 이행기간 TE와 동일하게 15%을 감 축하도록 되어있다. 생사는 주로 가공수출용 원료로 쓰이기 때문 국영무역은 종전대로 실시하되 마크-업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크-업의 크기는 기준기간(1986~88)중에 매 매실적에 기초한 매매가격차로 설정하고 있 는데 TE 수준의 약 70-90% 수준에서 결정 되었다.6 이와 같이 국영무역 품목간에도 다 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마다 그 특성에

⁵ 마크-업은 수입품에 대해 수입차익 상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차액 전액을 국영무 역기관이 흡수하는 것으로 GATT에 통보하 는 보호수준(수입차익)을 말한다.

다의· 四/kg

										Ψ.	LI. I 1/VR
품목	수입가격 품목 (CIF)		2차관세(TE) ③		마크-업 ④		시장접근 물량내 수입품 국내가격 ⑤=①+②+④		1		안정지표 가 격 (93년도) ⑦
			기준연도	2000년	기준연도	2000년	기준연도	2000년	기준연도	2000년	
버 터 탘지분유	267 231	93 58	1,200 500	1,020 425	926 349	808 304	1,286 638	1,168 593	1,470 730	1,290 655	1,032 514

표 2 일본의 수입 유제품 가격과 안정지표 가격비고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마크-업 이외의 주요 특징만 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현재와 같이 일정 조 건을 갖춘 수입업자가 수입하고 이를 식량 청이 인도 받아 도매업자에 판매하는 국영 무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수량의 일 부에 대해 동시매매제도(Simultaneous Buy and Sell: SBS)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매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가 사전에 수입할 쌀의 품질과 수량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에 양자가 결정한 수입 조건에 기초해 쌍방이 식량청에 동시 입찰하여 낙찰되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째, 1965년 이후 쌀이 가공용 원료로만 수 입되어 수입쌀에 대한 정확한 시장평가가 없어 매년 수입될 수입미의 정확한 시장평 가에 대한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둘째, 금번 쌀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해외에서 일 본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촉진시킴으 로써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쌀파동 을 완화하는 등 국영무역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주식용과 가공용 쌀로서 제1 차연도에 5.000톤(MMA 1.3%) 제2차연도 10,000톤(MMA의 2.2%), 제3차연도 이후에 는 2년간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되 대략 3차 연도에는 MMA의 4%, 6차연도에는 MMA 의 10%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매매 담당자 는 식량청에 등록한 수입업자와 都道府縣知 事의 허가를 받은 도매업자로 한정하여 입 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제품을 관세화하되 부족불제도와 축산진흥사업단에 의한 국영무역체제를 그 대로 유지하고,

둘째, 엔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본관세인 종가세에 종량세를 더한 복합 관 세를 도입하고 마크-업은 현재 국영무역에 서 부과하는 실제 마크-업보다는 높게 책정 하였다(표 2 참조).

셋째, 국영무역 품목인 버터와 탈지분유 등 지정 유제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연간 13.7만톤(원유 환산 수량)으 로 정함으로써 품목간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수입자유화로 수입이 급증하여 유제

⁶ 보리가 74%로 가장 낮고 탈지분유가 93%로 가장 높다.

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調整食用油脂에 대해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고율의 2차관세를 신설하였고

다섯째, 국영무역 품목의 경우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TE에 해당하는 수입차익을 축산진홍사업단 이 순간 터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UR 협상에서 유제품의 국영 무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부족불제도를 끝까지 UR 협상에서 고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보조감축(6년 20%)이 농업전체 또는 축산부분으로 볼 때 현재 시점에 모두 문제가 없어 부족불제도 시행에 전혀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7 이러 한 점은 우리 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루는 부 분으로 우리 나라는 쌀 수매량과 수매가가 국회동의를 거치는 동안 크게 늘어나 농업 보조금이 기준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 써 앞으로 국내보조 감축에 큰 어려움이 예 상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내보조 감축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속 국내보조금을 감축 해 온 결과 앞으로 UR 타결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국영무역 운용 물량(시장접근 물량)의 경우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안정지표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수 입품이 국내유통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접근 초과물량의 경우도 수입품가격이 안정지표가격을 상회 하도록 책정되어 2차관세(TE)에 의한 수입 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제품의 대용품으로 대량 수입되었던 調整食用油脂는 자유화된 품목이나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번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얻어 낸 품목이다. 따라서 동품목의 경우 2차관세(TE)는 1,363円/kg + 기본세율(35%)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자유화된 품목을 최선을 다해 관세화로 만든 것은 조정식용유지가 위장 유 제품으로 상당량 수입되었고 유제품은 그 종 류가 대단히 많아 그 상호 대체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점을 일본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예로 유제품 성 분 비율에 따라 TE를 계산함으로써 그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전지분유의 TE는 그 중요성이 높은 지정 유제품인 탈지 분유, 버터 등의 TE를 계산하고 이들의 구 성비율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유제품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은 일본의 축산정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 우 시설형 축산(양돈, 양계)은 이미 대기업 이 참여하는 등 이미 발전된 단계 또는 농민 의 손을 떠난 단계로 보고 국토 이용을 극대 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형 축산(비육우, 젖 소)에 관련대책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 은 2차관세(TE)를 지불하고도 수입되는 유 제품의 경우 차익금을 순간 터치 방식으로 축산진홍사업단이 징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가격이 하락하거나 국내가격이 폭등해 2차관세를 물고도 수입이 될 경우 그 관세 가 국세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터치

⁷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기준연도(1986-88)의 농 업전체 AMS는 5조엔이지만 현재 3.7조엔으로 26%가 삭감된 상태이고 축산부분 AMS는 기 준연도 1.2조엔에서 현재 7.7천억엔으로 35.8% 가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6년간 20%의 국 내보조 감축은 이미 달성된 상태에 있다

방식에 의해 축산진홍사업단으로 흡수되도 록 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시장접근 물량을 초 과하는 수입차익(TE)을 관세청으로 귀속시 킬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2. UR 이후 국영무역의 시사점

일본이 GATT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주 요 특징은 국영무역에 마크-업을 명기한 것 이다. 이처럼 일본이 국영무역 품목에 마크-업을 명기함으로써 GATT 2조 1항과 4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없애고 장기 적으로 국영무역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관 세와 더불어 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 C/S에 마크-업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검증 과정에 서 마크-업이 양해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GATT 2조 1항과 4항에 따라 마크-업부과 자체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부터라도 일본처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품목 별로 마크-업을 설정하고 WTO 통보 및·이 해 상대국과의 협의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유제품의 마크-업은 국내유제품 보호가 충분한 수준에서 설정되 어 있는데 우리도 협의과정에서 적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영무역 품목 중 쌀은 수입이 없었 거나 적은량이 가공용으로 수입된 바 있어 수입품에 대한 시장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일본처럼 SBS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시장평가 및 국영무역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 부분의 경우 수입이 없었거나 미미했던 품 목들이고 국영무역 운용 경험이 없었던 품 목들인 만큼 국영무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SBS제도에 대한 더많은 정보와 검 토가 요구된다.

셋째, 일본의 순간 터치 방식처럼 우리 나 라도 고율관세(2차관세, TE)를 물고도 수입 되는 경우 2차관세를 관세청으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피해부분으로 귀속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준연 도(1986-88) 이후 수입이 계속 급증한 품목 의 경우 시장접근 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2차관세를 물고 수입되는 물량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물량에 대해 그 차액을 국가 또는 국영무역 기관에서 순간 터치 방식으로 징수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일본은 유제품에서 본 것처럼 서로 대체관계가 높은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원료와 가공품간 문제, 가공품 간의 성분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TE나 마 크-업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처럼 충분한 고려가 없었는데 앞으로 마 크-업 계산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참깨는 국영무역 또는 마크-업 대상 품목이나 가공품인 참기름은 대상 품 목이 아니고 둘의 TE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 착유율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방치 할 경우 참깨의 국영무역이나 마크-업의 의 미는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유제품 처럼 원료와 가공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 대 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일본의 경우 1960년초부터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자유화 되었고 일부 품목이 잔존 수입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다. 잔존수입제한 품목 중 중요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UR에 임하는일본의 입장은 기존의 수입제한을 최대한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영무역품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중요 품목이 수입제한되어 있었고 UR 타결로 이들품목이 시장접근보장을 통해 일시에 수입될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입차익발생, 시장교란 요인이 있어 국영무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UR 이후 국영무역에 임하는 접근 방법과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국영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준비해 온 일본의 국영무역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일본 국영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일본 국영무역은 국내 수급안정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운용방법이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 확대될 국영무역에 대한 각종 법규 정비와 개정, 품목

별 운용방법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이다.

둘째, 일본은 C/S상에 마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국영무역에 대한 확실한기반을 대외적으로 확보한 반면 우리 나라는 마크-업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마크-업부과에 대한 대외적 기반 확보를 위해 품목별 마크-업 설정, 협의과정에 대한 대비가필요하고 GATT 규정에 맞는 운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의 경우 MMA 품목은 처음으로 국영무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동시매매입찰제도(SBS)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MMA 초과물량에 대한 2차관세는 일본처럼. 순간 터치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제품은 우유를 원료로 만들어지므로 서로 대체 관계가 높고 원료와 가공품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은 충분히고려하여 국영무역 및 마크-업을 설정하고있다. 우리도 대체성, 원료와 가공품 관계를일본처럼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할 때 국영무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 수입으로 국내 과잉이 발생할 경우 해외원조 및 시장외 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이며 수입차익에 따른 이익금의 활용 등도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지만 아직 자료가 없어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SBS제도, 순간터치 방식 등도 세밀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나 자료 제약으로역시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관세화에 따른 국경조치					
품 목 (품목수)	현 재 의 국경조치	국경조치의 기본적인틀	MMA물량 (국내 소비 량, %)	기본세율	Mark-up (6년간 감축률)	MMA 초과물량: 관세상당액 (TE) 부과 (6년간 감축률)	
• 쌀(7) (조제품포함)	• 수입수량 제한(IQ) 국영무역			관세 상당액 설정 없음 (관세화 특례 조치)			
• 맥류(11) (조제품포함) 밀 보 리	• 수입수량 제한(IQ) 국영무역	• 국영 무역 유지	• 5,565천톤 (84%) →5,740천톤 (87%) • 1,326천톤 (80%) →1,369천톤 (82%) (84%)	무세	•53¥/kg→ 45¥/kg (△15%) 34¥/kg → 29¥/kg (△15%)	•65¥/kg→55¥/kg(△15%) •46¥/kg→39¥/kg(△15%)	
• 유제품(8) (조제품포함) -탈지분유 -버 터	• 수입수량 제한(IQ) (일부국영 무역)	• 일부품목 에 대해 국영 무역 유지		버 터	• 358¥/kg→ 304¥/kg (△15%) • 950¥/kg→ 808¥/kg (△15%)	•65¥/kg→55¥/kg(△15%) •46¥/kg→39¥/kg(△15%	

부표 1 UR 타결 이후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도 개요(C/S 내용 요약) (계속)

		관세화에 따른 국경조치					
품 목 (품목수)	현 재 의 국경조치	국경조치의 기본적인틀	MMA물량 (국내소비 량 %)	기본세율	Mark-up (6년간 감축률)	MMA 초과물량: 관세상당액(TE) 부과(6년간 감축률)	
전 분(2) (조제품 포함)	• 수입수량 제한(IQ) ·	• 관세할당 제도(TQ)	• 157톤 (6.3%) →157천톤 (6.3%)	25%			
잡 두(1)	• 수입수량 제한(IQ)	•관세할당 제도(TQ)	• 120톤 (49%) →120천톤 (49%)	10%			
낙 화 생(1)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 제도(TQ)	• 75천톤 (10%) →75천톤 (49%)	10\$			
사탕수수(1)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 제도(TQ)	• 267톤 (8.2%) →267천톤 (8.2%)	40%			
소 계	21						
생사 · 누에고치(2)	 기타수입 제한 -생사: 국영무역 -누에고치: 사전확인 	생사: 국영무역누에고치 관세할당 제도(TQ)	• 798톤 (7.6%) →798톤 (7.6%)	•생 사 •누에고치	7.5% 140¥/kg	•생 사: 8,290¥/kg → 6,978¥/kg (△15%) •누에고치: 2,968¥/kg →2,523¥/kg(△15%	
돈 육(5) (조제품포함)	• 차액관세 제도	현행 428. •특별 Safeg	 도를 관세화: 5¥/kg(지육기 guard와 더불 '상하기 위한 경 '을 약속으로	준(에서 _, 15% 어 수입량 급 민급 조정 조			

주: 품목수는 HS 4단위 기준이나 중복으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참 고 문 헌

- 이재옥 외, 「수입개방 이후 농산물 수입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 연 北海道酪農協會,"酪農品關稅化についての動 구원, 1994.4
- 高橋伊一郎、「輸入農水産物-輸入制度と國內 天間征、"GATT/UR 決着以後の我か國酪農乳 流通」,農林統計協會, 1982.
- 宮 崎 ,「國際化と日本畜産の進路」, 家の光協 會. 1993.12

- 農林水産省, "農林に關する最終國別約束表の 概要," 1993. 12.
- 農林水産省, "GATT/UR 農業合意と我か 國 別表の概要," 1994.1.
- 向," 1994.
- 業の對應について,"「酪農セミナーデ キスト」, 酪農總合研究所, 1994.